

2021년도 광산보안기능사 실기시험 응시안내

1. 원서접수 안내

가. 종 목 명 : 광산보안기능사

나. 접수기간 : 2021. 5. 10(월) 09:00 ~ 2021.5. 13(목) 18:00

다. 접수방법 : [검정홈페이지\(https://mq-net.or.kr\)](https://mq-net.or.kr)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 (3.5cm × 4.5cm, 200KB 이내)을 맞추어 JPG, GIF, PNG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 광산보안기능사 : 28,800원(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만 가능)

2. 시험일정

가. 시험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동작구 대방동, 7호선 보라매역 78번 출구)

나. 시험방법 : 작업형 시험

- 광산보안계원 실무(질의응답 등)
- 광산작업환경 평가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 등

다. 시험일정 : 2021. 6. 12(토) ~ 6. 13(일)

구분	시험일정	제한인원
①	2021. 6. 12(토) 09:30~11:30 (09:00까지 입실 완료)	12명
②	2021. 6. 12(토) 13:00~15:00 (12:30분까지 입실 완료)	12명
③	2021. 6. 12(토) 15:30~17:30 (15:00까지 입실 완료)	12명
④	2021. 6. 13(일) 09:30~11:30 (09:00까지 입실 완료)	12명
⑤	2021. 6. 13(일) 13:00~15:00 (12:30분까지 입실 완료)	12명
⑥	2021. 6. 13(일) 15:30 ~ 17:30 (15:00까지 입실 완료)	9명

※ 유의사항 : 시험일자 및 시간(6.12~6.13 / ①, ②, ③, ④, ⑤, ⑥)별 제한 인원이 있음.

3. 시험 응시 유의사항

가. 작업형 시험 일반사항

- 작업형 시험의 복장은 소속을 식별할 수 있는 작업복을 제외한, 편안한 활동복, 활동화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작업형 시험 시 착용하는 안전모는 공단에서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참고자료2] 신분증 인정범위참조), 수험표, 검정색 볼펜 또는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수험자 교육시간 전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불가**
- 수험자는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실 출입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시험시작 후 재료교환 및 추가지급 불가)
- 음용수는 시험장내 제공이 불가하여 필요시 개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서울공업고등학교)은 금연구역입니다.

나. 부정행위 및 벌칙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됨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료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실(장)내의 기물 파손 시는 개인 변상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장에서 퇴장시킵니다.

4. 응시료 환불 안내

환불기간	환불율	비 고
2021. 5.10(월) 09:00~ 2021. 5.13(목) 23:59	100% 환불	카드결제-신용카드 결제 취소 가상계좌-기재한 환불계좌로 입금
2021. 5.14(금) 00:00~ 2021. 6. 7(월) 23:59	50% 환불	환불 신청 시 기재한 환불 계좌로 입금
2021. 6. 8(화) 00:00 이후	환불 불가	-

※ 환불 입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1. 7. 7(수) 09:00

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방법

- 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홈페이지(<https://mq-net.or.kr>) 공고

6. 기타 안내사항

가. 궁금한 사항은 자격검정실(033-902-65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자료1]

시험장약도

-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로1길 46 서울공업고등학교
- ◆ 전화번호 : 02-2082-1916~1923
- ◆ 교통안내
 - 고속버스이용 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차 후 지하철 7호선 이용(보라매역 하차 7, 8번 출구)
 - 열차이용 시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지하철 환승 이용(7호선 보라매역 하차 7, 8번 출구)
- ◆ 약도 및 시험장소



[참고자료2]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광해관리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구 분	신분증 인정범위
일반인, 대학생, 사병(군인)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 ⑥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중·고등학생	① 학생증 ☞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가능

<p>초등학생</p>	<p>①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p> <p>② 여권</p> <p>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p> <p>④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p> <p>⑤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p> <p>*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가능</p>
<p>외국인</p>	<p>① 여권</p> <p>② 외국인등록증</p> <p>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p> <p>④ 영주증</p> <p>⑤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p> <p>*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가능</p>

* 신분증의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공단 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상이자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

